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3-12

제출자	거창군수

1. 요구내용

○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,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함.

○ 근 거 :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, 제9조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

2. 주요내용

가. 현 황

○ 위탁시설 :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/ 69.2㎡

○ 위 치 : 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사과전망대 1층

○ 위・수탁내용

■ 주요사무 : 거창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, 판매장 시설 유지관리

■ 시설 및 장비

시설내역	장 비 내 역
사과전망대 1층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/ 69.2㎡	○ 계산대 1식, 진열대 1식, 쇼케이스 1식 ○ 저장창고 1식(냉장고, 진열대), 씽크대 1식 ○ 냉난방 공조시설 및 POS 시스템

나. 위탁사무

○ 시설 : 판매장 토지·건물·기계·물류기기 유지관리

○ 운영 :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 등

다. 운영현황

○ 취급품목 : 사과, 사과즙, 잡곡 등 20개 정도

○ 매출현황 및 시설사용료 납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계	2019년	2020년	2021년
매출액	200,444	92,667	68,998	78,420
사용료납부액	5,115	1,960	1,819	1,824

라. 위탁운영계획

○ 위탁자 공모

- 위탁기간 : 2023. 4. 3. ~ 2026. 4. 2.(3년간)
- 수탁대상 : 판매장 관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등

마. 소요예산

○ 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○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, 제9조

○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

○ 한국도로공사⇔거창군⇔(사)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협약 제6조

나. 위탁운영계획 : 따로 붙임

거창한휴게소「농·특산물판매장」
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

거창한휴게소「농·특산물 판매장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.

Ⅰ 법적근거

○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, 제9조
○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⇒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가능

Ⅱ 위탁현황

○ 위탁시설 :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/ 69.2㎡
○ 위　　치 : 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거창사과전망대 1층
(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181번지)
○ 수 탁 자 : (사)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(대표 : 이종희)
○ 위탁기간
- 2017. 4. 3. ~ 2020. 4. 2.(3년)(최초)
- 2020. 4. 3. ~ 2023. 4. 2.(3년)(갱신)
○ 위탁내용 : 농·특산물 판매 및 홍보, 판매장 시설 유지관리
○ 시설·장비

시 설 내 역	장 비 내 역
거창사과전망대 1층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(69.2㎡)	- 계산대 1식, 진열대 1식, 쇼케이스 1식 - 저장창고 1식(냉장고, 진열대), 씽크대 - 냉난방 공조시설 및 POS 시스템

Ⅲ 운영현황

○ 취급품목 : 사과, 사과즙, 장아찌 종류 등 20개 정도

○ 매출현황 및 시설사용료 납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매출액	40,555	67,222	92,667	68,998	78,420
사용료	1,147	2,008	1,960	1,819	1,824

※ 사용료 부과 기준 : 건물 사용면적(69.2㎡)×건물가액, 감면 적용

○ 자체평가 : 관련조례에 의거 매년 성과평가 실시

- 운영관리 등 3개분야 9개 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: 양호
- 재계약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주춤하였으나, 최근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음
- 상품의 다양화,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어 추후 수탁자 선정 시 관련부분 반영 예정

Ⅳ 위탁운영(안)

○ 위탁기간 : 2023. 4. 3. ~ 2026. 4. 2.(3년간)

○ 위탁사무 : 농·특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

○ 수탁대상 : 관리 및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, 단체 등

○ 선정방법 :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

○ 위탁비용 : 해당없음

Ⅵ 향후계획

○ 2023. 1월~2월 : 군의회 승인 요청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

○ 2023. 3월 :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

○ 2023. 4월 : 위탁운영 실시

붙임1 **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위탁 운영 관련 법령**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6. 21., 2015. 7. 20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 6. 21., 2015. 7. 20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21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 6. 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·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 6. 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· 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 6. 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 6. 12)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(전문개정2013. 6. 12)

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(개정 2013. 6. 12)